



교회조직과 지도자의 역할과 지침

GUIDELINES FOR LEADING CONGREG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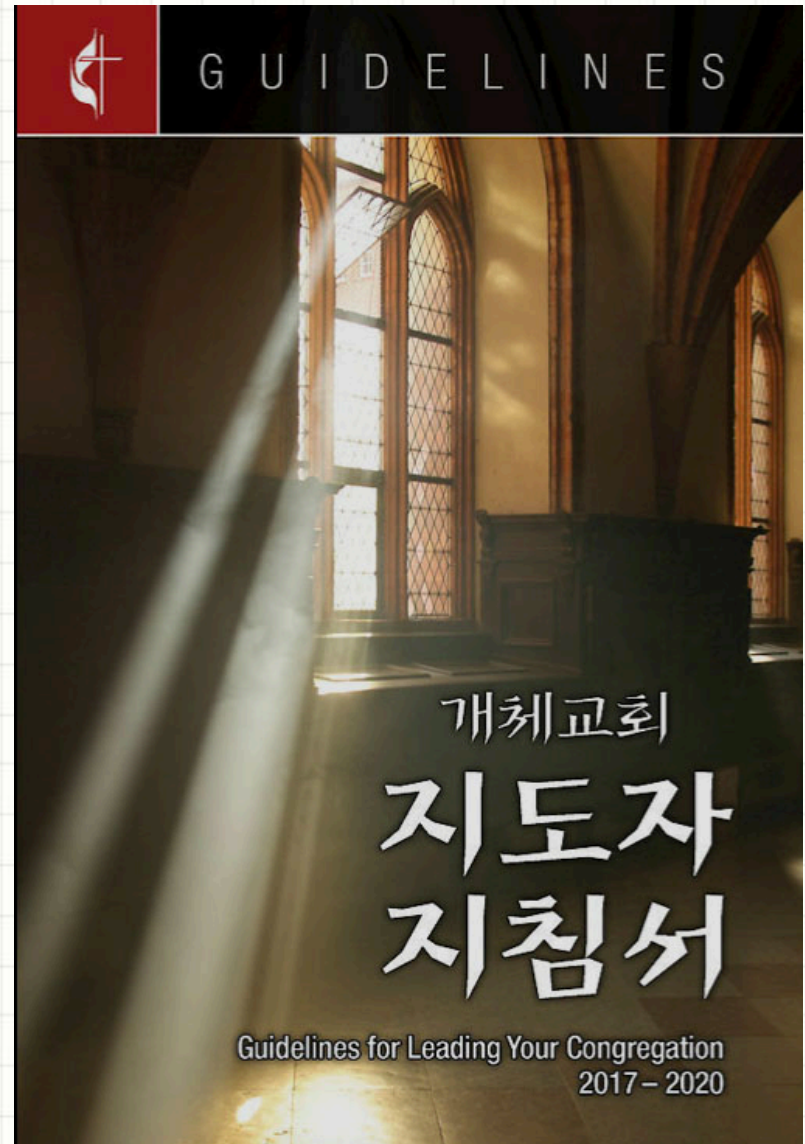
Presenter Name: Kyong Hwa Lee 이경화

Presentation Date: 2022.6.26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in Albuquerque

참고문헌 : 개체교회 지도자 지침서

- 저자:원달준
- 연합감리교회 출판부
- Cokesbury Press
Nashville, TN
- Guidelines for Leading
Your Church 2017-2020
- UMC 한국어자료:
www.umcdiscipleship.org/resources/korean-language-resource
- 우리교회용 도서/Library
Shelf, Rm105



교회의 사명과 조직

- 연합감리교회 개체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는 데 있다. (2016 장정 P120)
- 그러므로 연합 감리교회 개체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는 사명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이 필요!
- 사역을 위한 조직! 조직을 위한 사역이 아님!
- 교회의 사역 → 많은 일군 → 자원하는 봉사자

개체교회 (Your Church)

- 우리교회 창립의 특수성
 - 평신도에 의해 1982년 9월 창립예배
‘알버커키한인감리교회’ 로 시작
 - UMC의 세계선교국 (Global Board of Global Ministries)의 선교교회로 5년간 지원
1984년 11월 선교사 파송 (정용치 목사)
1985년 7월 28일 UMC교회 창립
-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in Albuquerque
- 한글이름: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 교회명 자문: 강사희교수 (언어학), Dr. Elkins

교회의 기본조직도표

개체교회

LOCAL CHURCH

Pastor
Lay Leader
Lay member of Annual Conference

PROGRAM

- (1) Worship
- (2) Christian Education
- (3) Children's Ministry/
Youth Ministry
- (4) Mission
- (5) Evangelism
- (6) Church and Society
- (7) Communications
- (8) Class Meeting
- (9) Church Historian
- (10) Men's/Women's
Ministries

ADMINISTRATIONS

- (1) Committee on Nominations & Personnel
- (2) Pastor Parish Relations Committee
- (3) Committee on Finance
- (4) Board of Trustees

담임목사
평신도대표
연회평신도회원

Church Council

교회임원회
임원회 회장

행정부서

- (1) 공천위원회
- (2) 목회위원회
- (3) 재정위원회
- (4) 재단이사회

프로그램부서

- (1) 예배부 (2) 교육부
- (3) 유년부/청소년부
- (4) 선교부 (5) 전도부
- (6) 사회부 (7) 공보부
- (8) 속회 (9) 역사편찬
- (10) 남여선교회

담임목사 (Pastor) 장정 P332

1. 영적으로 지도하는 일
2.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
3. 평신도를 지도하며 훈련하는 일
4. 치리자로서 비전을 보여 주는 일
5. 공동체의 온전성을 유지하는 일
6. 연합감리교회의 연대체제에 참여하는 일
7. 지역사회를 위하여 사역하는 일

평신도대표 (Lay Leader)

- 평신도대표는 개체교회의 평신도를 대변한다.
- 신실하고 책임성있는 신앙생활에 모범.
- 담임목사와 교회의 기본 사명에 대하여 수시로 상의한다.
- 평신도 대표는 직권상 재정위원회, 목회위원회, 공천위원회의 당연직 회원이 된다.
- 평신도대표는 10월에 있는 평신도주일을 주관한다.

연회평신도회원

(Lay Member of Annual Conference)

- 평신도대표와 연회평신도회원을 같은 사람으로 세울 수 있지만 분리하여 세울 수도 있다.
- 개체교회의 필요와 관심들을 연회에 전달해 줌으로써 개체교회와 연회 간에 교량 역할을 한다.
- 교회임원회에 참여하여 연회의 결정과 프로그램 정책 등을 개체 교회에 전달해 줌으로써 연회와 개체교회를 연결하여 준다
- 연회평신도회원은 재정위원회, 목회위원회, 공천위원회의 당연직 회원이 된다.

임원회(Church Council)

교회임원회는 행정을 처리하는 부서이다. 교회임원회는 교회 비전과 사명을 세우고, 각 부서로 하여금 기획하고, 기획한 것을 실천에 옮기고, 교회의 모든 기획과 프로그램을 교회의 사명을 토대로 하여 적절한 사역이었는지 아닌지를 평가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그룹이다.

교회임원회의 책임 (장정 P251.3)

1. 담임목사와 상의하여 교회 행정을 처리한다.
2. 교회의 모든 조직기관의 활동을 조율한다.
3. 양육사역, 대외선교사역, 증거사역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책임을 부여한다.
4. 교회가 필요로 하는 시설과 재정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5. 구역회가 모이기 전에 생긴 임원들의 공석을 공천위원들의 추천에 따라 보선한다.
6. 교회임원회 회장은 모든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석할 권한이 있다. (목회위원회만은 임의로 참석할 수 없다. 연회평신도회원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다.)

한인 교회 임원회

- 미국인 연합감리교회에서는 담임목사가 임원회장 직을 맡는 경우가 없지만,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는 지방감리사와 상의한 후 감리사의 허락하에 담임목사가 교회임원회 회장직을 맡을 수 있다.
- 이민교회는 한국교회 전통에 따라 연합감리교회 체제에 없는 집사, 권사, 장로 모두를 자동직으로 교회 임원회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 집사, 권사, 장로 모두를 임원회 회원이 되게 조직하느냐 아니면 특정한 부서의 사람들만 포함시키느냐 하는 이슈는 개체교회의 재량에 달려 있다.

한인 교회 임원회(주의사항)

장정은 교회 안에 두세 개의 다른 행정 그룹들을 조직하여 임원회 기능을 하는 조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인연합감리교회는 교회임원회로 임원회를 구성하든, 한국 전통에 따라 집사, 권사, 장로들을 다 포함시키는 제직회로 구성하든, 한 임원회만 조직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회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장로회에서 뒤엎을 수 없다. 행정 조직상 장로회가 교회임원회를 대행하여 결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교회임원회는 장정상 구역회를 대행하여 결정하는 대표 기구이기 때문에 개체교회를 위한 결정권이 주어진 기구이다.

행정 부서 (Administration)

- 공천위원회
(Nominations and Leadership Development)
- 목회위원회 (Pastor/Staff-Parish Relations
Committee)
- 재정위원회(Committee on Finance)
- 재단이사회(Board of Trustee)

공천위원회

(Nominations and Leadership Development)

책임

1. 교인들이 받은 은사와 재능을 찾아내는 일에 힘쓴다.
2. 교회와 지역사회와 세상이 필요로 하는 모든 부서를 섬길 수 있는 이들을 찾아내고 구역회에 천거한다.
3.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직분과 책임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 둔다.
4. 공천 과정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비밀로 지킨다.

공천위원회

(Nominations and Leadership Development)

조직

- 구역회에서 선출된 평신도 9명(매년 1/3 교체)
- 담임목사 (당연직이며 공천위원회 위원장이다)
- 평신도대표 (당연직)
- 평신도중에서 부위원장과 서기를 선출할 수 있다.(개체교회가 필요로 할 경우에 한함)

공천위원회

(Nominations and Leadership Development)

매해 공천하는 지도자들 (장정 P249)

- 임원회장
- 공천위원회 회원, 목회위원회 회원과 위원장
- 재정부장, 재무회계
- 재단이사회 회원와 이사장, 연회평신도회원, 평신도대표, 교회 교적서기.
- 남/여선교회 회장들은 선교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목회위원회 (Pastor/Staff-Parish Relations Committee)

책임 (장정 P258.4.g)

1. 파송을 위하여 감리사나 감독과 상의한다.
2. 유급사역자가 필요할 경우 목회위원회는 교회임원회에 그 직책에 대한 승인을 요구해야 한다. 임원회가 새로운 유급직책을 승인하면 재정부에 경비를 요구한다. 재정부는 교회임원회에 유급사역자에 필요한 총액을 요청한다. 교회임원회가 총액을 승인하면 유급사역자를 선정하여 초청할 수 있다.
3. 담임목사, 부목사, 유급사역자와의 관계에 대해 상의한다.
4. 담임목사와 상의하여 부목사와 유급사역자의 직책설명서를 작성한다.
5. 담임목사와 부목사 및 유급직원의 연봉, 교통비, 휴가, 건강보험, 연금, 주택, 그밖에 사역자의 활동과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문제들에 관하여 의논하여 관계된 부서에 보고한다. (예를 들어, 봉급은 재정위원회에 보고하고, 주택은 재단이 사회에 보고한다.)
6. 담임목사와 부목사와 유급사역자를 위한 연장교육을 위한 재정을 확보한다.
7. 비밀에 관한 정보는 절대로 다른 교인들과 나누지 않는다.

목회위원회 조직

1. 5명에서 9명 이내로 조직한다.(매년 1/3 교체)
2. 이들 중에 한 명은 연회평신도회원이어야 한다.
3. 평신도대표는 당연직 회원이다.
4. 부위원장과 서기를 뽑는다.
5. 같은 가족에서 한 명만이 목회위원으로 봉사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6. 담임목사나 교회 유급사역자와 관련(가족)된 사람들은 목회 위원으로 봉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목회위원회 협조사항

- 담임목사와 유급사역자의 보수를 매년 인플레이션 통계를 참고하여 검토하고 재정부에 보수 인상을 요청한다.
- 목사실과 유급사역자들의 사무실, 비품, 작업환경 등 건전성을 점검 한다.
- 교통비, 연회 참석비용, 연장교육비, 도서비, 외부강사 초청비용, 목회활동에 필요한 비용(손님 접대비)을 위한 예산을 세운다.
- 은급비, 건강보험비, 주택비, 노동자 재해보상 보험 (Workmen's Compensation) 등 봉급 외의 연회에서 규정한 지급사항을 점검한다.
- 휴가 기간 제공을 확인한다.

재정위원회(Committee on Finance)

1. 교회 전체 재정(재정 방향, 모금, 관리, 지출 등)을 책임진다.
2. 매년 교회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교회임원회에 제출한다.
3. 재정을 모금하고 관리한다.
4. 매주 헌금을 계산하여 은행에 예금한다.
5. 재정을 지출한다.
6. 프로그램 예산을 관리한다.
7. 투명한 재정보고를 한다. (IRS, 주보, On-Line 보고)
8. 연례감사 받은 것을 구역회에 보고한다.

재정위원회 조직

- 재정위원회 위원장
- 목사
- 교회임원회 회장
- 평신도대표/연회평신도회원
- 목회위원회 위원장 혹은 대표
- 재단이사회 이사장 혹은 대표
- 재무서기
- 교회회계
- 교회사무장
- 기타 구역회가 재정위원으로 선출한 사람(들) 담임목사 외의 모든 유급사역자는 재정위원회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재단이사회(Board of Trust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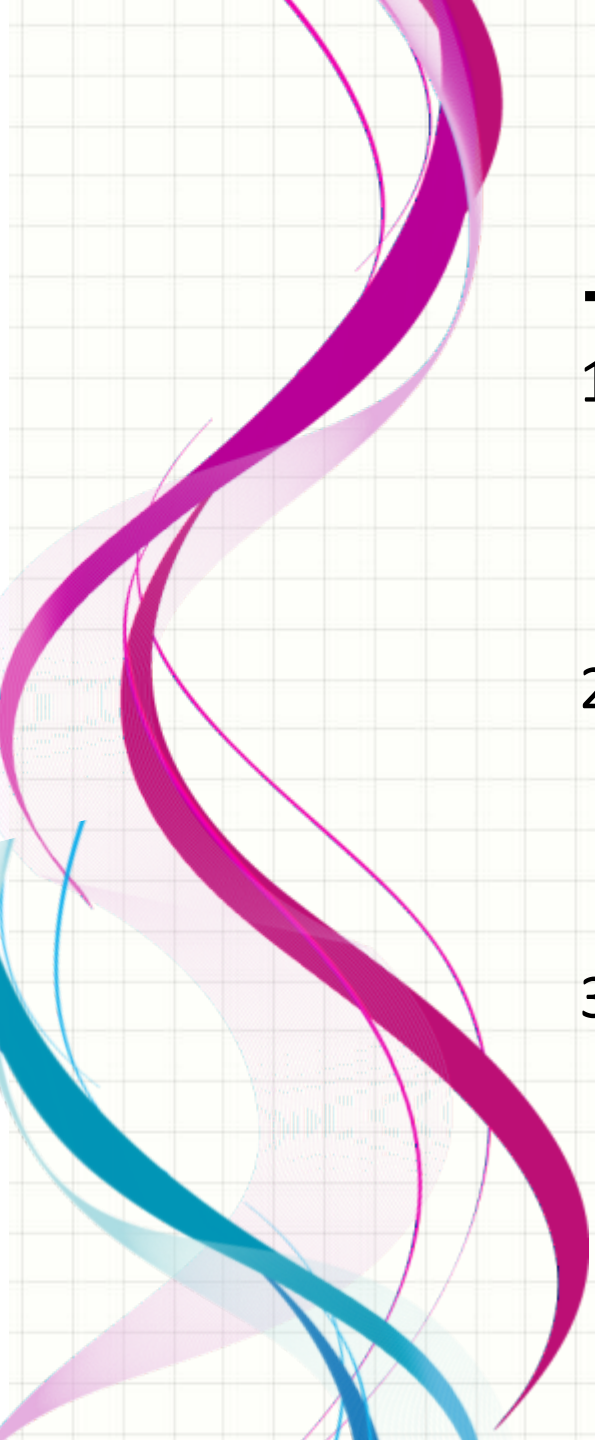
1. 개체교회의 모든 재산(동산과 부동산)을 관리하고, 점검하고, 재산과 관련된 법적 이슈에 대하여 행정적인 책임을 진다.
2. 개체교회의 모든 기물을 관리하고 재산의 매매, 담보, 저당, 수리, 개수, 증축을 위한 예산안을 임원회와 구역회에 보고한다.
3. 교회에 기증된 유증, 기부금, 유산 및 위탁금을 인수 또는 거절한다.
4. 구역회의 지시에 따라 개체교회를 비영리법인체로 정부에 등록하며 수시로 개체교회와 관계되어 있는 법문서를 법에 따라 갱신 한다. 개체교회가 소유한 모든 재산은 연합감리교의 신탁을 받은 소유자로 등기되어야 하며, 장정이 정하는 바 규정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재단이사회 (계속)

5. 담임목사와 상의하여 교회건물 사용을 위한 정책을 세운다.
6. 교회와 관계되는 보험을 들기 위한 예산안을 재정위원회에 신청한다.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월부, 보험료, 유지비, 개수비, 수리비, 세금 등을 위한 예산안을 작성하여 재정위원회에 제출한다.
7. 구역회와 교회임원회의 지시를 따른다.
10. 재단이사회 이사장은 교회임원회 회원이다. 재단이사장은 회의 안건과 법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을 교회임원회와 담임목사에 게 수시로 설명해 주어야 한다.

법인체 등록

1. 개체교회가 비영리단체로 연방정부에 등록이 되어야만 교인들의 헌금이 세금을 보고할 때 수입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2. 법인체로 되어 있어야만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3. 법인체의 이사회는 개체교회의 재단이사회가 되며 법인 이사회의 회계는 교회회계가 겸임해도 무방하다.
4. 주정부 사이트: New Mexico Secretary of State, Corporations and Business Services
5. <https://portal.sos.state.nm.us/BFS/online/CorporationBusinessSearch>
6. 교회 법인체이름(Entity Nam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in Albuquerque, Inc. ID # : 2039162
7. 개체교회가 소유한 모든 재산은 연합감리교회의 신탁(Trust)을 받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장정 P2501)



프로그램 부서

1. 양육사역부: 예배, 교육, 그리스도인의 인격 형성 (영성훈련), 교인 관리, 소그룹, 속회, 청지기 등에 관심을 두는 사역
2. 대외선교사역부: 선교, 사회, 인종관계, 여성 지위향상, 고등교육, 지역 및 전체 사회를 위한 자선, 정의 옹호사역
3. 증거사역부: 전도, 공보/홍보, 평신도전도, 신앙체험을 나누는 사역, 봉사활동 사역 등 모든 프로그램 부서를 개체교회에서 그대로 조직 하라는 말이 아니다.

예배부(Worship)

- (1) 교인들이 원하는 생동적인 예배의 취향을 알아보고 담임목사와 수시로 상의하여 은혜로운 예배 분위기를 제의한다.
- (2) 담임목사 혹은 성가대 지휘자와 상의하여 예배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아본다.
- (3) 교회력(강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과 봄/가을 부흥집회를 점검하고 예배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준비한다 (촛불, 성만찬, 포인세티아, 백합화 등).
- (4) 예배부 주최 회의를 준비하고 인도하며, 예배와 관계된 좋은 자료들이 있으면 회원들과 함께 나눈다.
- (5) 교회임원회에 참여하여 예배와 관계된 것들을 보고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6) 안내위원과 헌금위원들의 책임을 잘 알려 준다.
- (7) 성만찬을 위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한다.
- (8) 전 예배부장으로부터 어떤 사항들이 잘 이행되고, 이행되지 않는지를 미리 알아둔다.

교육 (Christian Education)

교육부장/주일학교 교장의 책임

- 교육 행정과 교인의 교육 프로그램을, 주일학교 교장은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책임진다.
- 교육 프로그램을 교인들에게 홍보한다.
- 여름성경학교 (VBS)를 계획하고 운영한다.
- 교육부 예산을 재정위원회에 제출/ 관리한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전도

한인교회에서는 건전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이는 교회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한인교회는 교육 프로그램과 교회 성장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육 프로그램이 잘 되면 교회도 부흥하며, 교육 프로그램이 부진하면 교회도 쇠퇴해진다. 그러므로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면서 교회를 강화시켜야 한다. 교회는 예배와 기독교교육과 봉사생활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예배와 기독교교육이 없는 교회는 천 명, 만 명이 모여도 오합지졸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속회

속회의 목적과 기능

-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로서의 속회 (마태복음 18:18-20)
-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육성하는 속회 (마태복음 28:19-20)
- 서로 축복하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속회 (로마서 14:14-15)

속회의 중요한 특성

- 신앙생활의 경험을 나누는 모임이다.
- 속회는 속장과 인도자에게 달려 있다.

다른 교육부서들

- 유년부
- 청소년부
- 중고등부
- 장년부
- 가정부
- 소그룹사역

선교사역

- 선교부
 1. 교회 차원에서 선교
 2. 선교관련 교육 3. 선교사 지원
- 여선교회/ 남선교회
 1. 여성/남성 교인의 공동체
 2. 선교에 동참/친교/하나님과 가까워짐
- 사회부
 1. 사회봉사/ 지역사회활동
 2. 특정 정당 후원은 하지말것

증거사역

전도부

- 새신자를 보살핀다
- 방문객을 환영하는 교회인가?
-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심방
- 교회멤버의 주소, 전화번호를 정리/관리
- 교회주보를 결석자에게 우송
- 지역한인을 교회로 초청할 프로그램 계획
- 새신자를 꾸준히 접촉하여 전도를 모색
(교회소개물, 심방, 편지등)

증거사역

교회역사편찬위원회

1. 역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도구
2. 교회의 보고서, 기록물 문서 정리 보관
(주보, 주소성명록, 교적부, 뉴스레터, 장례식 기록, 행사사진, 녹음, 녹화, 건축관련 등기, 법적 서류)

증거사역

공보위원회

- 교인에게 알릴 이야기 홍보
주보, 뉴스레터, 카카오톡, 페이스북, 비디오
- 지역사회에 알릴 이야기를 홍보
신문, 잡지, 웹사이트, Facebook, Poster
- 인터넷 활용
교회 홈페이지 관리, 업데이트

끝맺는 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
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누가 10:2)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
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
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이사야 6:8)